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입주자모집공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코로나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홈페이지(<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를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일정과 실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청약.계약 관련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문의로는 **분양 상담 전화 (☎ 1688 - 6014)** 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용검사(2020.10.07.)된 주택으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견본주택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동.호수의 마감재를 본 아파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5.16.**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전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 인증서
아파트 1·2순위	○	○	○	○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청약 제한사항"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확인" "주택 소유확인" 등 청약 제한사항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청약 제한사항을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제한(LTV, DTI 등), 청약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 '성년자'와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 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1.11.16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 되는 자) /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thesharp-jijecentralpark1.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 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5.16)'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 7일의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층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층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층 제한기간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 기간 (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 2020년 4월 16일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한 주택의 해당층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층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층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해당층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매가 제한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	--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 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인 평택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구 분	입주자모집공고	일반공급 1순위(해당)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일반공급 1순위(기타) (평택시 6개월 미만, 전국)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2년 05월 16일(월)	2022년 05월 26일(목)	2022년 05월 27일(금)	2022년 05월 30일(월)	2022년 06월 07일(화)	2022년 06월 09일(목) ~ 2022년 06월 16일(목)	2022년 06월 18일(토) ~ 2022년 06월 20일(월)
비 고	청약자격 등 판단기준일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사무실 방문 접수 ※ 사전 방문 예약제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장 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삼1로 163 더샵 지지역 센트럴파크 1BL 후문상가 101호 ※사전예약자도 확인 후 방문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주택과 - 16119호(2022.04.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19-9번지 외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최고 27층, 23개동, 총세대 2,124세대 중 조합원 1,486세대, 기존분양(일반분양) 629세대를 제외한 후분양(일반분양) 9세대
- 입주 예정월 : 2022년 8월
- 공급대상

(단위: m²,세대)

구 분	주택관리번호	모 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지분(m ²)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총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022-000257	01	059.6236A	59A	59.6236	20.0801	79.7037	2.1917	31.2442	113.1396	40.7598	1	1	-
		02	059.7656B	59B	59.7656	19.7250	79.4906	2.1969	31.3186	113.0061	40.8569	1	1	-
		03	074.9744B	74B	74.9744	24.1671	99.1415	2.7560	39.2884	141.1859	51.2539	2	2	-
		04	074.7312C	74C	74.7312	23.5597	98.2909	2.7471	39.1609	140.1989	51.0876	1	1	-
		05	083.7111	83	83.7111	25.5745	109.2856	3.0772	43.8666	156.2294	57.2265	2	2	-
		06	084.7982	84	84.7982	25.8922	110.6904	3.1171	44.4363	158.2438	57.9696	2	2	-
합 계											9	9	-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타 입	주택형	세 대 수	동 호 수	분 양 가 격			계약금 (20%)	잔금 (80%)
				대 지 비	건 축 비	분 양 대 금	계약 시	계약체결일 + 30일
59A	059.6236A	1	116동 602호	55,457,505	371,542,495	427,000,000	85,400,000	341,600,000
59B	059.7656B	1	102동 803호	55,589,583	370,600,417	426,190,000	85,238,000	340,952,000
74B	074.9744B	2	102동 1004호	69,735,694	443,124,306	512,860,000	102,572,000	410,288,000
			103동 1904호	69,735,694	462,914,306	532,650,000	106,530,000	426,120,000
74C	074.7312C	1	119동 903호	69,509,487	434,680,513	504,190,000	100,838,000	403,352,000
83	083.7111	2	106동 902호	77,861,932	464,278,068	542,140,000	108,428,000	433,712,000
			107동 702호	77,861,932	464,278,068	542,140,000	108,428,000	433,712,000
84	084.7982	2	106동 604호	78,873,073	468,166,927	547,040,000	109,408,000	437,632,000
			107동 1301호	78,873,073	479,616,927	558,490,000	111,698,000	446,792,000

• 주택형표시안내

(단위: m²)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59.6236A	059.7656B	074.9744B	074.7312C	083.7111	084.7982
타입 (약식표기)	59A	59B	74B	74C	83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 홍보관 및 카탈로그 /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품목(유상옵션)제외 금액임.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일부 중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가 있으며,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동·호수에 한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금액이 발생함.

102동 803호 (59B) : 시스템에어컨 (고급형3대_거실+침실1+침실2), 107동 1301호 (84) : 시스템에어컨 (고급형3대_거실+침실1+침실2)

※ 주거 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 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금액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준공인가(2020.10.07.)된 후 분양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10.07.)된 후 분양 아파트로서 상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는 발코니 확장 시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므로 미확장 시공이 불가함
- 상기 공급되는 동·호수 중 추가 옵션(시스템에어컨) 시공 된 동·호수가 있으며, 시공된 옵션품목을 변경 및 철거를 사업주체에서 해줄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2020.10.07.)된 아파트 이므로,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건물)가 가능 하며,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및 모산·영산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일정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잔금은 계약 체결 후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준공인가 완료 된 아파트로서 납부일자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이 적용 되지 않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첨함.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대화상의 착오로 인해 응답하지 않음.
- 매수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6)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거주하거나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인 1순위 청약 불가하며,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청약자격제한, 1순위 청약접수일정 분리,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일반공급 1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 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별 공급비율 : 가점제 75%, 추첨제 25%)
- 1순위 청약접수 시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됩니다.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구성원 포함)]에 속한 자

거주 구분	청약 순위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기타지역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전국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75%). 추첨제(25%)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2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 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본인이나 동시 청약(1인 1건만 신청 가능)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재당첨 제한 (1·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 부적격 당첨자가 소멸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
 - *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 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가능
 - * 청약부금은 85㎡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 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시 청약 가능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 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
 - * 세대 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자격 충족
- 청약 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시 청약 가능 (감액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 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② 나머지 **25%**의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세대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조건 승낙이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thesharp-jjcentralpark1.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제한사항 및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신청 시 청약자가 입력(선택)한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 소유현황, 청약 제한사항 등을 전산 검색하여 당첨자 또는 세대구성원의 청약 제한사항,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제한 사항이 발생하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합니다. 또한, 당첨(계약)취소 세대는 공급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III 청약 신청일정, 신청방법 및 장소(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2.05.26(목) 09:00~17:30	• 인터넷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홈 • 정보취약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1순위 (기타지역)	2022.05.27(금) 09:00~17:30		
	2순위	2022.05.30(월)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 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 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차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IV **당첨자 발표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반공급	1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2.06.07.(화)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 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 상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제 출 장 소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제출 기간,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2022.06.09.(목) ~ 2022.06.16.(목) 10:00 ~ 16:00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삼1로 163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후문상가 101호 *사전 방문 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 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 기간 내(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 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함함)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 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록 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설정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 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대리인 제출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외국인등록증)
부적격통보 받은 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주택 및 '부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thesharp-jjcentralpark1.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6.07.(화) ~ 2022.06.16.(목) (10일간)
인 터 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당첨 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6.07(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 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 약 기 간	장 소	문 의 전 화	비 고
2022.06.18.(토) ~ 2022.06.20.(월) 3일간, (10:00~16:00)	주택홍보관	1688 - 6014	사전 방문 예약제로 계약체결 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일정, 장소, 시간 등이 변동 가능

- 계약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홍보관 제출[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1순위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아파트 분양금액	BNK경남은행	207 - 0068 - 4773 - 00	(주)무궁화신탁	

- 상기 입금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상기 입금계좌에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 품목(유상음선) 계약금을 합산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함.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름.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홍길동' / 102동 102호 계약자 → '1020102홍길동')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점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 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점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 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이후 잔여 세대 발생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첨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점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 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 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점취소 또는 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점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점자 중 부적격 당점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점 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점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점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점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예비입주자의 선정 가점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 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 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점이 취소된 부적격 당점자가 당점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점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점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점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점 인정, 후 당점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점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점 또는 분양 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점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하며, 당점취소 세대는 당점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 일정상 계약 완료 이후 일정 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 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점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계약 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점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체결조건**

- 평택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모든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세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추첨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 받은 경우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공급계약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인지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정부수입인지를 종이문서로 발급(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온라인 발급 또는 은행 및 우체국 등 방문 발급) 받아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 정부수입인지 발행 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지정 기간** : 공급계약서상의 **잔금납부 일자로부터 + 30일** (단, 잔금 완납(공급금액+발코니 확장공사비+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된 계약자에 한함))일이 입주지정 기간보다 빠를 경우 입주 가능)
- 본 아파트는 잔금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중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 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중 발급일 중 빠른 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중 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 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잔여 분양금액(잔금),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계약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 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절기 입주 시 세대 물청소 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 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 내 입주세대는 입주개시 당일 이전까지, 입주지정기한 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일 당일까지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키포출 세대는 키포출일 당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 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포출세대 부담으로 함.)
- 스마트홈2.0 어플을 사용하기 위한 고정IP는 입주 후 1년간 제공됩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품목(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VAT포함)

주 택 형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계약 시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59.6236A	9,434,000	1,887,000		7,547,000	
59.7656B	10,376,000	2,076,000		8,300,000	
74.9744B	12,670,000	2,534,000		10,136,000	
74.7312C	9,657,000	1,932,000		7,725,000	
83.7111	14,831,000	2,967,000		11,864,000	
84.7982	14,950,000	2,990,000		11,96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구 분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BNK 경남은행	207 - 0068 - 4773 - 00	(주)무궁화신탁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와 동일하며, 계약체결 이전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 품목(유상옵션) 계약금을 합산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함.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0.10.07.) 된 아파트로써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 할 수 없으며, 공급되는 모든 동·호수에 발코니 확장시공이 되어 있으므로,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외 별도 발코니 확장비용을 납부해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 품목 (유상옵션)

(1) 추가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주 택 형	동·호수	금 액	계약금 (20%)	잔금 (80%)	설치 품목
			계약 시	잔금 또는 입주지정일	
59.7656B	102동 803호	5,080,000	1,016,000	4,064,000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3대_거실+침실1+침실2)
84.7982	107동 1301호	5,390,000	1,078,000	4,312,000	시스템에어컨 (고급형 3대_거실+침실1+침실2)

(2) 추가 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추가 품목 납부계좌	BNK 경남은행	207 - 0068 - 4773 - 00	(주)무궁화신탁

· 추가품목 납부계좌는 분양금액 납부계좌와 동일하며, 계약체결 이전 분양금액, 발코니 확장공사비, 추가 품목 계약금을 합산하여 비용을 납부해야 함.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20.10.07.) 된 아파트로써 상기 표의 동·호수에 추가 품목(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비 외 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함.
- 상기 표의 동·호수에 따라 추가 품목이 있는 경우 추가 품목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품목을 설치요청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추가 품목에 대하여 설치해드리지 않음.
- 상기 추가품목 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VII 단지 여건사항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람,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개발사업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평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으며, 본 사업지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되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사항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중, 고등학생은 평택시 및 인근지역 학교에 배치 가능함(단, 본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으로 향후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의 통학구역은 2020.09.01.개교 된 평택모산초등학교 임.
- 본 사업지의 중학생은 평택중학군(비전중, 세교중, 신한중, 평택중, 평택여중, 한광중, 한광여중, 용이중)에 배치됨.
- 당 사업지 서측으로 근린공원 용지, 동측으로 상업주거지역이 위치하며 향후 공사가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및 교통 정체 발생할 수 있음.
- 당 사업지 북측 37m 도로가 위치하고, 동측에는 15m 도로가 예정되어 차량 통행 및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도로와 인접 경계부 사이에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설치됨.
- 비상도로의 일부구간은 자전거 도로로 사용됨.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 단지 주변에는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임.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아파트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지역난방 공급자인 평택에너지서비스(031-646-4200)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에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주택홍보관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여건

-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법'(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법)으로 운영할 수 없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아파트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동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주출입구 부근에 근린생활시설물로 인해 소음 및 시선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임.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2개층(일부1개층)으로 각동별 주차배분 및 주차구획까지의 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모든 동이 지하2층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101, 102, 103, 104, 105, 106, 107동 3-4호 라인, 112, 113, 114, 115동은 지하1층만 연결됨) 이의 배치 및 사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
- 119-121동, 122-124동, 123동, 104동, 105동 주변도로는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로 사용되며 차량 헤드라이트에 의한 눈부심 및 차량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4동, 105동 사이, 119-121동, 122-124동 사이 및 113동, 114동 인근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시야 간섭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19-121동, 120동, 122-124동, 123동 인근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지붕 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119-121동 전면 및 120동 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3동, 104동 인근에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103동 측면 및 104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불빛 등의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1동, 102동, 106동~109동 인근, 111동~115동, 117동, 120동 인근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1동, 106동 인근에 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유치원 운행차량에 의해 보행자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 된 경로당, 어린이집으로 인해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 주거동 인근에 설치된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에 따른 소음 및 간섭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DA(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시공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사용해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상가동 건물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106동 수공간 1개소 및 116동, 118동 수공간 1개소 총 2개의 설치품목을 준공 승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였음.
- 116동, 118동 인근에 수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110동, 111동, 113동, 114동, 115동 인근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시야간섭, 조명간섭이 발생 할 수 있음
- 102동, 106동, 107동, 116-118동, 117동, 124동, 125동 인근에 타라이트(천창)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선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101동, 126동 및 119-121동 인근에 선콘, 외부 계단실 및 외부 엘리베이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시야간섭, 빛 반사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2,3호세대 후면, 4호세대 측면, 102동 2,3,4호세대 후면, 103동 2,3,4호세대 후면, 104동 2,3호세대 후면1호세대 전면(삭제), 105동 3호세대 측면, 106동 1호세대 전면, 107동 2,3호세대 측면, 108동 2호세대 측면, 109동 2호세대 측면, 110동 2호세대 측면, 111동 1,2호세대 측면, 112동 1호세대 측면, 115동 1호세대 측면, 2호세대 정면, 116동 2호세대 전면, 117동 2호세대 후면, 118동 2호세대 측면, 120동 2호세대 전면, 119동 1호세대 전면, 3호세대 측면, 122동 1,2호세대 전면, 123동 1호세대 후면, 124동 2호세대 측면, 126동 2호세대 전면 등에 DA (급배기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선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보행동선과 인접하여 타라이트(천창) 및 DA(급배기구)가 계획되어 있어 산책 시 소음 및 시선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차폐하기 위한 식재 등 차폐물의 위치, 규모, 사양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Top Light(타라이트)는 지하주차장의 자연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므로 절대 상부에 올라가서는 안되며, 이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 102동 4호세대 전면, 104동 3호세대 전면 및 122-124동과 123동 사이에는 단지내 레벨차를 이동하기 위한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각동 1층 일부에 유사시 사용되는 제연휨룸 DA가 설치되어 있어 경관,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20동 2호세대 전면 및 측면, 126동 2호세대 전면 하부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각동 전면에는 유사시 사용되는 안전메트 이용을 위해 수목의 식재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사생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 바, 이용상의 불편 및 인접세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를 확인하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내 어린이안전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어린이집 부속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준공한 단지이므로 준공도면과 단지주변의 여건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준공한 단지이므로 세대별 기시공된 옵션(기본형 옵션, 플러스 옵션)은 승계해야 하며, 마감된 사항은 준공도면과 샘플세대를 통해 시공현황을 확인해야 함
- 각 세대의 물사용 발코니에 선홍통 및 드레인 등으로, 우천 및 인접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세탁실, 다용도실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 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 시공됨
- 설비 배관 및 환기 관련 덕트 내부에는 일체 마감 (마장 또는 콘크리트 면처리) 이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부 경량 천장 내부 및 마루 바닥 하부에는 벽체 마감 (타일,도배지,아트월) 이 시공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출입부 계획에 의하여 2층 엘리베이터 홀에 채광창에 고측창인 등이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람
- 본 아파트의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음.
- 각 층별 엘리베이터 이용에 따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함(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 발생)
- 단위세대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들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무선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술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욕실바닥 및 물쓰는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고는 거실기준 기준층 2.3m 이며, 욕실과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상부에는 주방 배기를 위한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일부 유니트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다용도실과 실외기실의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세대환기장치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다용도실 천장에 세대환기장치 설치 시 천장이 설치 될 수 있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점검구가 설치됨)
- 세대 냉매배관은 기원료 되었으므로, 세대별 냉매배관 및 시스템에어컨을 확인하여야 하며, 각 시스템에어컨의 추가설치는 불가함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샘플세대 또는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해당사항없음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	공동주택성능등급
<p>녹색건축물 예비 인증서</p> <p>건축물 개요: 지세 선포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주: 지세 선포피아 지역주택조합, 준공(예정)일: 2019.09.30, 용도: 아파트, 방에서 동작성 모션영상 도시개발사업, 지구 공동주택용지 1BL, 주: 지하2층, 지상27층(2,124세대), 면적: 289,207.8399㎡, 건축용적률: 공동주택, 일대지: (반부리)상부 종합건축사사무소</p> <p>인증 등급: 인준 등급: 일반(2인4등급), 인준 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건축물부고시 제2014-205호, 환경부고시 제2014-213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2인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 표지이용 및 교통: 58%, 에너지 및 환경오염: 41%, 재료 및 자원: 43%, 물순환관리: 27%, 유지관리: 69%, 생태환경: 56%, 실내환경: 68%</p> <p>인증등급 ★☆☆☆</p> <p>2017년 11월 02일 한국감정원</p>	<p>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 평가결과서</p> <p>발급번호: 제2016-055호</p> <p>1. 사업명: 지세 선포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지세 선포피아 지역주택조합 3. 대지위치: 경기도 광덕시 오산 말신지구 공동주택용지 1BL 4. 사업개요: 대지면적 105,691.0000㎡, 건축면적 15,439.7093㎡, 연면적 289,207.8399㎡, 총세대수 2,124세대, 주건축물수 26동</p> <p>5. 대상지역: 지역 II</p> <p>6. 평가결과: 구분 평가개수, 적합, 부적합, 미검</p> <p>출입문: 16개, 적합 벽체절단부: 1,460개, 적합 창호: 91개, 적합</p> <p>2017년 08월 28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지세 선포피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 신청자: 지세 선포피아 지역주택조합 3. 평가등급: 인준</p> <p>1인 1등급: 0, 2인 1등급: 0, 3인 1등급: 0, 4인 1등급: 0, 5인 1등급: 0, 6인 1등급: 0, 7인 1등급: 0, 8인 1등급: 0, 9인 1등급: 0, 10인 1등급: 0, 11인 1등급: 0, 12인 1등급: 0, 13인 1등급: 0, 14인 1등급: 0, 15인 1등급: 0, 16인 1등급: 0, 17인 1등급: 0, 18인 1등급: 0, 19인 1등급: 0, 20인 1등급: 0, 21인 1등급: 0, 22인 1등급: 0, 23인 1등급: 0, 24인 1등급: 0, 25인 1등급: 0, 26인 1등급: 0, 27인 1등급: 0, 28인 1등급: 0, 29인 1등급: 0, 30인 1등급: 0, 31인 1등급: 0, 32인 1등급: 0, 33인 1등급: 0, 34인 1등급: 0, 35인 1등급: 0, 36인 1등급: 0, 37인 1등급: 0, 38인 1등급: 0, 39인 1등급: 0, 40인 1등급: 0, 41인 1등급: 0, 42인 1등급: 0, 43인 1등급: 0, 44인 1등급: 0, 45인 1등급: 0, 46인 1등급: 0, 47인 1등급: 0, 48인 1등급: 0, 49인 1등급: 0, 50인 1등급: 0, 51인 1등급: 0, 52인 1등급: 0, 53인 1등급: 0, 54인 1등급: 0, 55인 1등급: 0, 56인 1등급: 0, 57인 1등급: 0, 58인 1등급: 0, 59인 1등급: 0, 60인 1등급: 0, 61인 1등급: 0, 62인 1등급: 0, 63인 1등급: 0, 64인 1등급: 0, 65인 1등급: 0, 66인 1등급: 0, 67인 1등급: 0, 68인 1등급: 0, 69인 1등급: 0, 70인 1등급: 0, 71인 1등급: 0, 72인 1등급: 0, 73인 1등급: 0, 74인 1등급: 0, 75인 1등급: 0, 76인 1등급: 0, 77인 1등급: 0, 78인 1등급: 0, 79인 1등급: 0, 80인 1등급: 0, 81인 1등급: 0, 82인 1등급: 0, 83인 1등급: 0, 84인 1등급: 0, 85인 1등급: 0, 86인 1등급: 0, 87인 1등급: 0, 88인 1등급: 0, 89인 1등급: 0, 90인 1등급: 0, 91인 1등급: 0, 92인 1등급: 0, 93인 1등급: 0, 94인 1등급: 0, 95인 1등급: 0, 96인 1등급: 0, 97인 1등급: 0, 98인 1등급: 0, 99인 1등급: 0, 100인 1등급: 0</p> <p>2017년 11월 02일 한국감정원</p>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 내의 공동주택용지에 공급하는 상품으로서,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의 사정으로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시 대지권 설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홍보관 및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구조
회사명	(주)영화키스톤 건축사사무소	(주)성우엔지니어링	(주)신화엔지니어링	(주)단이엔씨
감리금액	5,343,340,900원	976,800,000원	1,154,000,000원	140,8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 행 사	시 공 사	비 고
상 호	지제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현춘5길 5-20, 40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법인등록번호	-	174611-0002979	

■ 홈페이지 주소 : <http://thesharp-jjicentralpark1.kr/>

■ 주택홍보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삼1로 163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1BL 후문상가 101호)

■ 분양문의 : ☎ 1688 - 6014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해서는 주택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홍보관에서 확인 바랍니다.